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2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이해식・박정현・정을호

채현일 • 조정식 • 김문수

황명선 · 남인순 · 서영교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 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 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8명(대통령이"를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로, "구성한다)을"을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을"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피해"를 "피해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설치·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립 등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운영·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9명</u>	<u>13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	
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u>8명(대통령이</u> 소속되	<u>10명(</u> 국회의장이 추천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	<u>하는 2명, 대통령이</u>
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	
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u>구</u>	<u> </u>
<u>성한다)을</u> 대통령이 임명한다.	성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u> 2명을</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u>피해</u> 및 명예회복) ① 정	제36조(<u>피해보상</u> 및 명예회복) ①
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	
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u>피해</u>	<u>ज</u> ो जो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u>운영·관리</u> 등을 수행할 과거 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 <u>·</u>관리
 - 2. ~ 4. (생 략)
 - ④ (생 략)

<u>보상 및 명예회복을</u>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설치 · 운영 · 관리
② (현행과 같음)
③
1. 과거사 추모일 지정, 추모공
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
립 등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 • 운영 • 관리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